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악취피해

사건 개요

전북 전주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쓰레기자원화시설의 이전과 9,918만 5,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정내용

처리시설로부터 200m이상 이격된 마을에서의 악취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유

치하였다.

신청인은 전주시 ○○구 ○○동 주민들로서 '02. 5 월부터 가동된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시설이 동네에 있어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전주시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여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와같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1인당 415,000원씩 총 99,185,000원을 배상하고, 쓰레기자원화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도보 건환경연구원에서 '02. 5. 21 악취측정결과 직접관능법 1도로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에도 신청인들이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측정 요구로 전북대학교 부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타' 등에 악취 재측정한 바 배출 허용기준이내였으나, 피신청인은 주민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2. 8. 19 ~ 9. 24에 130 백만원정도 투입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보완 설

【 악취 측정결과 】

측정일시	측정기관	측정방법	측정장소	측정결과	비고
0.2. 5. 21	보건환경 연구원	직접 관능법	부지 경계선	1도	기준 2도
0.2. 5. 21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타	기기 분석법	감수 마을	1도	「도」로 환산
0.2. 5. 21	산업공해 연구원	기기 분석법	부지 경계선	0.134 ppm	암모니아(기준 2ppm)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근무자를 24시간 배치하며, 마을을 순회 악취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외에도, 처리장 부지 공원화,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중 파쇄기 이전, 악취도 3도이상 시 가동중지 및 주민숙원사업비(450백만원) 확보 등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데도 억지 주장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주제1산업단지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고, 인근에 신청인의 감수마을이 있으며, 동에서 남으로 이어진 전주 제1산업단지(106개 업체 입주) 인근 주택들이며, 북측에 동부우회도로가 지나고 있고 남동에서 북서로 전주천이 흐르고 있다. 신청인 대표자의 거주지는 팔복동2가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직선거리로 1,500m정도 떨어져 있고, 그외 신청인은 팔복동4가 주민으로 자원화시설 부지경계선에서 200~500m정도 떨어져 있다.

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1999년 위생처리장시설을 전주시환경사업소로 이전하자 동 부지에 1,889백만원(국비 700, 도비 350, 시비 83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공사에 착수 2000. 12. 12에 호기성 퇴비형식으로 완공된 처리용량 60톤/일 규모의 시설로 시작하였으나,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100톤이므로,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민자를 유치·시설을 확장하고, 동 확장시설을 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음식물쓰레기 전문처리업체인 (주)푸른환경과 10년간 위탁운영을 협약하였다.

이에 (주)OO환경은 협약에 따라 1,650백만원이 투입, 탈수기, 파쇄기, 건조기, 보일러, 냉각기, 탈취소각로,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 기존 호기성 퇴비시설을 건식 사료 및 퇴비시설로 변경하고 처리용량도 99톤으로 확충하여 2002. 5. 15부터 2012. 5. 14까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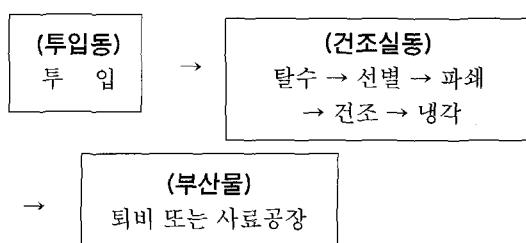
탁운영하고 있다.

처리공정은 투입 → 탈수 → 선별 → 파쇄 → 건조 → 냉각 → 부산물(퇴비 또는 사료 공장)이며, 월평균 처리량은 약 3,000톤이며 톤당 처리비는 42,900원이다.

※ 구 위생처리장은 1976. 11. 30 고속산화식 활성오니법(100kl/일)으로 시작하여 1982. 5. 27 고속산화식 활성오니법(100kl/일) 증설하고, 1986. 11. 10. 호기성 소화식 (90kl/일)을 증설하였으며, 1999년 위생처리장시설을 전주시환경사업소로 이전하면서 지역이기주의로 쓰레기 매립지확보의 곤란 등으로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조치에 따라 기존시설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로 활용하게 된 것임.

다. 악취방지시설

○ 공정도



※ 투입, 탈수시에는 활성탄 흡착처리, 건조시에는 소각처리(탈취보일러)

○ 방지시설

악취가 밖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흡수처리하는 등 시설로 자동 개폐식 전동샷트 1셋트, 출입구 에어 커튼 4셋트, 악취 흡입용 브로워 2셋트, 탈취탑 2기, 탈취세정탑 2기, 싸이크론 2셋트, 폐가스 소각시설 (5,400kg/h, 150m³/min발생, 고체연료환산계수 0.6) 1

[환경분쟁조정사례]

기, 가스냉각시설 2기 등이 있고 그밖에 이동식 탈취제 살포장치 1식이 있다.

라. 악취측정 결과

①'02. 5. 2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부지경계선에서 악취측정결과 직접관능법 1도, ②'02. 8. 16. 전북대학교 부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타"가 감수마을에서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 측정결과(환산치) 1도, ③'02. 10. 24 산업공해연구원이 기기분석 대상물질 악취측정결과 메틸메르캅탄·황화수소·황화메틸·이황화메틸 등 4개 항목은 검출되지 아니하고, 암모니아 0.134ppm(기준 2ppm), 트리메틸아민 0.0016ppm(기준 0.02ppm), 아세트알데히드 0.026ppm(기준 0.1ppm), 스티렌 0.019ppm(기준 0.8ppm) 등 4개 항목은 기준치 이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지방환경청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①'03. 8. 29 08:00경에 부지경계선에서 직접관능법으로 악취를 측정한 결과 2도이하(평균 1도)이었을 뿐만 아니라, ②'03. 11.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측정결과도 2도이하로 나타나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다.

마. 신청인 추가제출 자료

당사자 심문시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재정을 유보시켜 제출된 자료는 ①시설운영자인 ○○환경의 악취방지시설 관리 및 개선 계획, ②악취 관련 처리시설 현장사진(12장), ③인터넷 민원게시판 신문고 질의응답내용이고, ④전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신청인 대표)의 전화를 받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장에 들려 냄새가 있었음을 증언하는 내용과 전주매일 ○○○기자가 ○○마을 입구에서 간장달이는 냄새가 난다고 증언하는 내용의 녹취록1(테이프 포함), ⑤ ○○○이라는 사람과 ○○마을 주

민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장근로자와의 냄새관련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2(녹음 내용은 녹취록1과 같음)이며, ⑥전주기상대 기상개황 자료, ⑦전주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내용, ⑧○○환경전주공장의 악취방지 시설을 주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⑨전주매일 신문기사, ⑩전주시장과의 대화내역과 2003년도 전주시의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서(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 환경관리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역비가 편성되지 아니하였다) 내용이다. 또한, ⑪위탁운영후 보수공사 내역(전주시 공문), ⑫악취 발생 그간의 경위 및 ⑬전주시 사업계획 및 합의서와 ⑭전주시에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계획 및 합의서 등 총 14건이다.

바. 민원 대책

전주시는 민원대책으로 주민 지원사업비 450백만 원(120세대×375만원)을 확보하였고, 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업지역 악취 등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과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폐쇄·보완 및 유해물질(다이옥신) 제거시설 설치 의무화 유도하였다. 또한, 전주지방환경청, 전북도, 전주시 환경단체,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으로 환경보전협의회 구성·운영하고 있고, 전주공업지역 환경오염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부지공원화 요구에 따라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11월 준공 예정), 과채기 이전 등 정당한 요구사항은 전폭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2. 인과관계 검토

분쟁지역 부지경계선에서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측정결과 직접관능법 1도, 전북대학교 부설 전북지

역환경기술센타가 신청인 마을에서 기기분석법(환산치) 1도, 산업공해연구원이 부지경계선에서 기기분석법으로 암모니아 등 8개 항목 모두 기준이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지방환경청에 의뢰하여 신청인들이 측정을 원하는 '03. 8. 29 08:00경에 부지 경계선에서 직접관능법으로 악취측정결과 2도이하(평균 1도)이었을 뿐만 아니라, '03. 11.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측정결과도 2도이하로 나타나 모두 배출 허용기준치이내다.

신청인의 대표자는 분쟁지역과 직선거리로 1,500m정도 떨어져 있고, 기타 신청인은 분쟁지역부지경계선에서 200~500m 떨어져 있다.

악취기준, 악취측정결과, 시설의 위치·경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측정결과는 모두 기준 이내이고, 제출된 자료로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

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요구나 시설이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시설의 위치·배경, 악취기준, 측정지점·결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산업단지내에 있고 악취도가 부지경계선에서 모두 기준이내이므로 처리시설로부터 200m이상 이격된 감수마을에서의 악취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02. 5월부터 가동된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4년 연합회 주요사업

“환경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 전개

- 본지 2페이지 참조 -